

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(제7조 관련)

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	요양급여	요양생활수당
1. 원발성 악성종 괴종 및 원발성 폐암	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
2. 석면폐증(제1 급) 및 미만성 흉 막비후	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. 다만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연간 본인부담상 한액을 초과할 수 없 다.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
3. 석면폐증(제2 급)	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
4. 석면폐증(제3 급)	나. 「의료급여법」 제 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 10조에 따라 피인정 자가 부담하는 금액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)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